

# 한국항공우주학회 논문집 윤리규정

제정: 2008. 7. 18.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항공우주학회 회원들이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한국항공우주학회 국문논문집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항공우주 학계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자의 윤리 규정)** 투고논문의 저자는 논문 작성 및 제출에 있어 다음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저자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인권존중, 생명윤리 준수 및 환경보호 등의 보편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주제에 대해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2. 저자는 투고할 논문에 연구내용과 결과를 완전하고 간결하며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며, 다른 연구자 자료의 부적절한 사용(표절)이나 연구결과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3. 저자는 논문의 연구내용과 깊은 관련이 있는 공개된 학술자료를 이용할 경우에 참고문헌에 포함시킴으로 출처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4. 저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얻은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인용하고자 할 경우에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활용하여야 한다.
5. 저자가 다른 학술지에 투고 혹은 게재하였거나 투고할 예정인 논문을 본 학회에 이중으로 투고하는 행위는 부정한 행위로 허용되지 않는다.
6. 연구 수행과정에서 중요한 기여를 한 모든 연구자는 공저자가 되어야 하며, 교신저자 혹은 책임저자는 논문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책임진다.
7.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등과 같은 학술외적 지원, 또는 단순한 학술적 조언 등에 대해서는 “후기”를 통해 관련 내용을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논문을 투고하기 이전에 저자는 필요할 경우 저작권 등과 관련된 관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추후에 어떠한 형태의 분쟁도 발생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야 한다.
9. 투고 후 논문에서 오류가 발견될 경우, 이를 수정하거나 논문을 철회하는 것은 저자의 의무이다.

**제3조(심사위원의 윤리 규정)** 심사위원은 다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심사위원은 저자의 성별, 나이, 인종, 소속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 친분 등에 따른 편견 없이 논문을 일관된 기준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에 근거한 심사는 배제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심사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수정 및 보완을 상세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편집위원의 윤리 규정)** 편집위원(편집위원장, 편집이사, 편집위원)은 다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 및 판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편집위원은 저자의 성별, 나이, 인종, 소속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 친분 등에 따른 편견 없이 심사논문에 대한 판정업무를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일관된 기준으로 논문의 게재 여부나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유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절차를 통해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조치를 취한다.

1. 투고논문이 심사과정에서 비윤리적인 행위가 적발되거나 탄원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사안의 비중을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편집위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약간 명으로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관련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객관적이며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되 당사자 또는 해당 기관에 30일 이내에 문서를 통한 해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3.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

4. 이사회에서는 연구윤리위원회 보고서 및 편집위원회 결정사항을 검토하여 최종적인 조치를 취하며, 기 게재된 논문이 관련되었을 경우 해당 논문의 게재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사항)**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적 규범에 의거 판단한다.

## 부 칙

1. 이 규정은 200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